

세종시민체육대회 규정

제정 2014. 4. 11.
일부개정 2026. 05. 2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및 개최근거) ①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는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제2항 및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정관 제2조에 의하여 세종시민체육대회(이하 “시민체전”이라 한다)를 매년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개최한다.

② 시민체전은 모든 시민에게 스포츠를 보급하고, 스포츠정신을 고취하여 시민의 체위를 향상시키며 지역체육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고, 명랑하고 질서있는 사회 기풍을 조성하여 세종시 체육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세종시민체육대회”라 함은 체육회에 가입된 회원종목단체의 학생부, 일반부를 대상으로 경기를 진행하는 대회를 말하며, 약칭은 “시민체전”으로 한다.

제3조(시민체전에 관한 권리 및 권한) 체육회는 시민체전의 조직,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독점적 권리를 갖는다. 단 이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4조(대회 횟수) 시민체전은 2012년 개최한 제1회 대회부터 횟수를 기산하고 부득이 한 사정으로 대회를 개최하지 않는 연도도 횟수로 포함하여 통산한다.

제5조(개최 시기 및 기간) ① 시민체전은 매년 하반기에 2일간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개최 시기 및 일정을 시민체육대회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종목별 특성에 따라 사전경기 개최를 허용할 수 있다.

제6조(경기 행사 제한) 시민체전 개최일 5일 전부터 종료일까지 읍·면·동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와 그 산하 연맹체는 종목별 경기 행사를 개최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체육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대회 상징마크) 시민체전의 상징마크는 세종시의 상징마크 또는 체육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대회 표어) ① 시민체전 표어는 시민체육대회 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대회 표어를 주경기장과 각 종목별 경기장에서 게시하되,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대회가) 시민체전의 대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의 노래 “꿈의도시 세종”으로 한다.

제10조(대회 명칭 등에 관한 권리) 대회 명칭, 대회상징 마크, 대회 표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체육회의 독점적인 권리이며, 타인이 이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체육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대회 상징물 및 권리) ① 대회 홍보 및 대회 특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체육회는 대회 상징물(대회 엠블럼, 대회 마스코트, 대회 구호 및 대회 포스터)을 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대회 상징물(대회 엠블럼, 대회 마스코트, 대회 구호 및 대회 포스터)의 모든 권리는 대회 종료 시 까지 체육회가 소유하며,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육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세종시민체육대회 위원회

제12조(설치) 체육회 정관 제37조에 따라 설치 운영하며 그 명칭은 세종시민체육대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1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시민체전 준비에 관한 사항
2. 시민체전의 개최시기 및 기간 선정에 관한 사항
3. 시민체전의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경기종목, 참가요강, 특별상 심사 등)
4. 기타 시민체전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제1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체육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단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1. 당연직: 체육회 사무처장, 체육진흥과장, 읍·면·동체육회 대표(회장, 사무국장), 개최 종목 회원종목단체 대표

2. 위촉직: 체육, 문화, 언론, 시민대표 등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서 위원회 결정을 대신 할 수 있다.

제1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체육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임기만료일은 정기총회일 전날이다.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장 경기종목

제18조(경기종목) ① 시민체전의 경기종목은 정식종목과 시범종목으로 나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체전 정식종목(11): 게이트볼, 당구, 배구, 배드민턴, 볼링, 수영, 육상, 족구, 축구, 탁구, 테니스
2. 시민체전 시범종목(5): 궁도, 그라운드골프, 씨름, 야구소프트볼, 파크골프

- ② 제2항의 제1호에 해당하는 종목 중 해당연도에 특별한 사유 없이 개최하지 않은 종목은 다음해부터 시범종목으로 실시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종목은 2년 후 시범종목에서 제외한다.
- ③ 신설종목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범종목으로 실시한다.
- ④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신설 또는 강등된 시범종목은 2년이 지난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식종목으로 승격 할 수 있다.
- ⑤ 대회기간 중 사고 및 물의를 일으킨 종목은 정상화 될 때까지 시민체전 종목에서 제외 또는 조정 할 수 있다.

제19조(경기종목 등의 채택 및 취소) 경기종목, 부별, 종별 세부 종목의

채택 및 취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4장 대회 운영

제20조(경기운영) 시민체전의 모든 경기는 참가요강 및 회원종목단체의 경기규칙에 따라 운영하며 체육회는 대회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일정 및 대진추첨) 종목별 경기일정은 회원종목단체와 협의하여 체육회가 결정하며, 경기대진은 각 읍·면·동체육회 대표자가 추첨으로 결정한다.

제22조(경기방법) ① 시민체전의 경기는 읍·면·동 대항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민체전의 모든 경기운영은 종목별 참가요강에 의하되, 참가요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경기 종목의 경기규칙에 따른다.

제23조(경기심판) ① 경기진행에 있어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경기를 담당한 주심이 이를 처리한다.

② 주심의 판결에 대한 이의는 해당 경기부분의 심판장이 이를 처리한다.

③ 해당 경기 부분 심판장의 판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이를 처리한다.

제24조(예선대회) 읍·면·동체육회는 시민체전 참가 읍·면·동 대표선수를 선발하기 위하여 예선 대회를 개최 할 수 있다.

제25조(참가신청) 읍·면·동체육회는 대회 참가요강에 의거 기일 내에 체육회 소정양식의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참가요강) ① 시민체전의 일반사항, 참가자격, 경기종목별 참가요령 등은 체육회가 별도로 정한 참가요강에 의한다.

② 시민체전 참가요강 변경사항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참가요강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체육회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제27조(순위결정) 시민체전은 읍·면·동별 시민들의 과도한 경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종목별 시상만 실시한다.

제28조(시상구분) 시민체전의 시상은 종목별 세부분야에서 입상한 개인 및 단체에게 1위 금메달, 2위 은메달, 3위 동메달을 각각 시상한다.

제29조(평가회 개최) 시민체전의 준비단계 부터 종료 시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개선사항을 차기 대회에 반영하기 위한 평가회를 개최 할 수 있다.

제5장 개 · 폐회식

제30조(초청) 개·폐회식의 초청은 체육회 회장 명의로 하며, 초청 인사에 대해서는 체육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31조(일정) 개회식은 대회 첫날, 폐회식은 대회 최종일 마지막 경기 종료 후에 거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달리 할 수 있다.

제32조(개 · 폐회 선언) 개·폐회 선언은 체육회 부회장이 한다.

제33조(개회식 구성 및 운영) 개회식은 식전행사, 공식행사로 구성하며 체육회에서 별도로 정하여 진행한다.

제6장 중계방송권 및 광고

제24조(중계방송권) ① 시민체전의 개·폐회식 및 각 종목별 경기의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 중계방송과 관련된 녹화 제작물 등에 관한 권리는 체육회의 독점적 권리이다.

② 제1항에 명시된 권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체육회의 별도 규정 및 협약에 의한다.

제25조(주관방송사) ① 체육회는 시민체전의 중계방송 권리, 개·폐회식 등 행사 전반에 관하여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주관방송사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주관방송사는 지상파 방송사업자, 지역방송사,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③ 주관방송사의 선정 및 주관방송사의 권리와 의무는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

④ 주관방송사 선정은 위원회에서 한다.

제7장 소청 및 처리

제34조(소청처리 및 징계) ① 시민체전에 참가한 임원, 선수 및 응원단에 부정 또는 불미한 사실이 있거나 경기운영에 따른 종목별 경기에 대한 소청 및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이를 처리한다.

② 대회 중 경기장 질서문란 행위에 대한 징계는 체육회 스포츠공정 위원회에서 처리한다.

제35조(참가금지) ① 시민체전에 참가 신청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거나 경기에 출전하였다가 도중에 기권 선수 및 단체는 차기 시민체전에 참가를 금할 수 있으며, 대회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읍·

면·동체육회를 통해 기권 사유서(일시, 장소, 주요사유 포함)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기권 사유가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차 기 시민체전 참가를 금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해당선수 및 단체에 대한 대회 참가 심의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선수 및 관계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제36조(지위변동) 무자격 선수가 출전하였을 때에는 즉시 실격으로 하고 그 선수 또는 단체가 획득한 모든 지위는 무효로 하며, 실격선수 또는 단체에 패한 상대방의 지위는 회복되지 아니한다.

제37조(규정준수의무) ① 시민체전을 준비하거나 운영하는 관련단체는 이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가 있다.

② 해당 단체가 이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체육회의 별도 지시에 따라야 한다.

부칙(2024. 4. 11.)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6. 05. 25.)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